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40
----------	-------

제출년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 및 국무총리령(제545호)시행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통합체계 구축 내용을 추가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실을 동두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조례 제명변경(안 제1조)
- 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세분화(안 제6조)
- 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구성을 상담지원팀과 운영지원팀으로 구분(안 제7조)
- 라. 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이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와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안 제11조 내지 15조)
- 마. 청소년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지원을 위한 연계 협력 기관으로 학교지원단 및 1388청소년 지원단 설치(안 제16조 내지 18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명칭은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이하“상담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지원센터는 동두천시 관내에 둔다.

제3조(기능) 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상담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방문상담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관리, 사례집 발간 등
5.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등 운영
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7.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및 상담 교육·법률·의료 등 지원
8.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 복지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의 설치) ① 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면적기준에 의한

상담활동공간(상담실, 검사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지원센터의 설치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시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소유로 된 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 형편상 공유재산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 개인 등이 제공하는 시설과 공공시설 등의 부대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상담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이나, 상담지원센터장이 공휴일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시간 : 09:00부터 18:00까지(야간 상담시간은 18:00부터 21:00시까지로 하고, 공휴일에는 녹음예약으로 한다.)
2. 휴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제6조(운영) ① 상담지원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상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기존 근무인력에 대하여는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시장은 상담지원센터 조직을 청소년관련 중앙부처의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상담지원센터장, 상담지원팀, 운영지원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은 상담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담지원센터장 1명, 상담지원팀 2명, 운영지원팀 2명, 행정원 1명 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요원의 임용) ①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 상담지원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제7조제1항에 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고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임용할 수 있다

② 운영요원의 선발을 위하여 시장은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이 임명 시에는 동두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운영요원의 복무) 상담지원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 ① 상담지원센터 운영요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관련 중앙부처의 운영지침」 및 「동두천시 여비 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경력 산정 및 호봉승급 필요기간(승급기간)은 1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매년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2의 경력 산정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소속하에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협의회에 두는 학교지원단의 단장
3. 협의회에 두는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 나.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 다.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소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 라. 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 마.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 바. 상담지원센터의 장
 - 사.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 아. 법률전문가

자. 학부모 대표

차.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및 관계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를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심의와 조정
2. 상담지원센터 운영실적의 평가
3.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및 자문
4.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실행위원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담지원센터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상담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각급 기관 및 복지시설, 청소년 단체 등의 업무관련 실무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회의는 격월로 운영하되, 필요시 사례판정위원회 회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행위원회의 기능)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발굴
2.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제16조(지원단의 설치) ① 협의회는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과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 보호를 위하여 1388청소년지원단을 상담지원센터에 둔다.

② 학교지원단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부장 또는 진로상담부장 교사로 구성하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기관, 단체,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제17조(학교지원단의 역할 및 운영) ① 학교지원단은 지역내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간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 안 청소년의 상담·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간의 연계·협력 방안
 2. 운영협의회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방안에 관한 사항
- ② 학교지원단은 반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며 단장은 단원중 1인을 호선한다.

제18조(1388청소년지원단 역할 및 운영) ①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지원체계로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
 3.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센터의 통합지원 종결 후 결연·후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② 1388청소년지원단은 반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며, 단장은 단원중 1인을 호선한다

제19조(문서관리) 상담지원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청소년 관련 중앙부처의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지원센터 직원과 협의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상담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상담지원센터 안전관리를 위한 각호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건물화재보험 가입(건물,비품등 모든 설비)
2. 각종 사고에 대해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 의무 가입
3. 야외현장체험 프로그램시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 여행자 보험 가입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관련 중앙부처의 운영지침」, 국무총리령 제545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소관실과		사회복지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사회복지과장 문 영 철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사회복지팀장 류 순 상
	담당자 성명 · 전화	주무관 박 수 웅 860-2148